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43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안태준 · 소병훈 · 정준호  
문진석 · 부승찬 · 김정호  
조정식 · 김영진 · 이정문  
이연희 · 윤준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

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제4조제8항·제5조제4항 신설 및 제53조 등).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장애아동”이란 장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가 있는 아동을 말한다.

제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를 즐기고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건강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주거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이·여가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9.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11. 재원조달방안
12.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3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이”를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로, “아동전용시설”을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본 이념) ① ~ ④ (생략)  <u>&lt;신 설&gt;</u></p>	<p>제2조(기본 이념)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 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u></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lt;신 설&gt;</u></p>	<p>제3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장애아동”이란 장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가 있는 아동을 말한다.</u></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생략)  <u>&lt;신 설&gt;</u></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여가를 즐기고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 ③ (생략)  <u>&lt;신 설&gt;</u></p>	<p>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이 휴</u></p>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① (생략)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4. 재원조달방안
  -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오락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① (현행과 같음)
- ② -----  
-----.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사항
- 2. 아동의 복지에 관한 사항
- 3. 아동의 건강에 관한 사항
- 4. 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사항
- 5. 아동의 주거에 관한 사항
- 6. 아동의 놀이·여가에 관한 사항
- 7. 아동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 8.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 9.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10.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 11. 재원조달방안
- 12.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③·④ (생략)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인정되는 사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등)  
 ① -----아동이  
성별, 연령, 장애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아동전용  
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  
설을 말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  
이놀이기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를 개발하거나 설치하는 자에  
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